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, 등록번호판의 회수·반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 반납 없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”를 “제1호, 제1호의2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(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)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제1호</u>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,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.	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 <u>제1호, 제1호의2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1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</u>
2. ~ 4. (생략) ② ~ ⑨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60